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3
----------	-----

2021. 9. 14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9월 8일

-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정기 균형건설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자치 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)
 - 심의·의결사항 추가 :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항 신설
 - 전문적 조사·연구 추진(안 제14조)
 -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안 제명은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,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임.
- 안 제5조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가 2020. 6월 개정 시행되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안 제14조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의5가 2021. 6월 신설되어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사·연구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.

- 안 제15조는 「지적재조사 업무 규정」제7조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·배포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「공직선거법」과 사전 충돌을 예방하고자 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6. 29. ~'21. 7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「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, 전문적인 조사·연구 추진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및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)
 - 심의·의결사항 추가 :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항 신설
 - 전문적 조사·연구 추진(안 제14조)
 -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(안 제1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”를 “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조사·연구 등) 도지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홍보) 도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인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</u>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도지사</u>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③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9조에 따른 <u>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</u>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)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<u>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</u> 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

<신 설>

제14조(조사·연구 등) 도지사는
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
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
가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전문
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
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
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조(홍보) 도지사는 사업 추진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
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
주민 등에게 배포 할 수 있다.

부칙

<신 설>

제2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
한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
본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인 2030
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제29조(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) ① 시·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(이하 “시·도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시·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

1의2. 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2.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

3. 시·군·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

4.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시·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⑤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해당 시·도의 3급 이상 공무원
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

3.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

4.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

⑥ 시·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⑦ 시·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그 밖에 시·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

법 제5조의2(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시행령 제4조의5(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) ①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2.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

□ 지적재조사 업무 규정

제7조(주민홍보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.

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,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적재조사 사업에 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조사·연구 근거 마련과 홍보물품 제작·배포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·배부

3. 관련조문

- 안 제15조(홍보) : 도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1년~2030년(10년간)
- 홍보물품 제작·배포 예상 개수 : 1,000개

나. 추계 결과

- 산출과정
- 10,000원(홍보물품 1개당 제작 단가) × 1,000개 = 10,000천원
- 산출결과 : 연간 10,000천원(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100,000천원)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 (21년)	2차 (22년)	3차 (23년)	4차 (24년)	5차 (25년)	6차 (26년)	7차 (27년)	8차 (28년)	9차 (29년)	10차 (30년)	계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0,000
홍보물품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0,000

6. 작성자 :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장 김민정